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799호
2. 발 의 자 : 박춘선 의원, 이종태 의원
3. 발의일자 : 2025년 5월 26일
4. 회부일자 : 2025년 5월 29일

II. 제안이유

- 최근 개발사업의 증가와 학교 주변에서의 싱크홀 사고 등으로 인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학생 안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이에 AI, 빅데이터, IoT등 신기술 기반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사고 예방 조항을 신설하여, 실질적인 교육안전 강화와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규정에 인용된 「교육기본법」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수정함. (안 제1조 개정)
- 나. 교육기관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기술 기반 시스템의 활용에 관한 교육감의 노력 의무를 명시함 (안 제10조 제3항 신설)

Ⅳ. 참고사항

- 1. 관계법령 : 「교육기본법」
- 2.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 3. 입법예고 : 2025. 6. 3. ~ 6. 7.(의견 : 없음)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박광선)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5년 5월 26일 박춘선, 이종태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2799호로 공동 발의되어 2025년 5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안전사고 예방을 의무화하고 있는 「교육기본법」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이와 함께 신기술 기반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교육기관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목적 규정 개정에 대한 검토 (안 제1조)

- 안 제1조는 지난 2024년 2월 13일 「교육기본법」 개정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규정하는 제17조의5가 동법 제17조의6¹⁾으로 조문 이동함에 따라 이를 현행 법령에 맞게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현행 조례 제1조는 「교육기본법」 제17조5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의 안전보호 및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의무화하여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에 서울시 소재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활동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령인 「교육기본법」의 개정사

1) 「교육기본법」 제17조의6(안전사고 예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항2)을 반영하여 동 조례 제1조의 내용 중 제17조의5가 제17조의6으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이처럼 현행 법령의 개정 내용을 동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그 근거가 되는 조문을 현행화하는 것은 조례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조례 목적의 명확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안전사고의 예방 규정의 내용에 대한 검토(안 제10조3항)

- 안 제10조제3항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기술 기반 시스템을 학교안전 관리에 적극 도입하여 효율적인 사고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한 것입니다.
- 이와 관련해 교육부 주관 「제4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2025~2027)」은 급변하는 교육환경을 반영하여 위기 대응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AI 디지털 기반 교육 도입 및 학교 내 돌봄기능 확대 등 학교 교육환경 변화로 기존 학교 안전관리 정책의 한계³⁾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표-1] 최근 5개년 학교안전사고 발생 현황⁴⁾

	2019	2020	2021	2022	2023
학교안전사고 발생 건수	138,784	41,940	93,177	149,339	193,177

2) 「교육기본법」 제17조의6(안전사고 예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 20.][제17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17조의6은 제17조의7로 이동 <2024. 2. 13.>]

3) 교육부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3년 주기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있음. 해당 내용은 제4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2024.12)에 의한 것임

4) 교육부, 학교안전지원시스템 학교안전통계 참고

-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능형, 학생 맞춤형 과학적 예측 시스템을 기반으로 기존의 사후 대응에서 ‘예방 중심’ 재난·안전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한편, AI·IoT·빅데이터 등 신기술과 기 축적된 학교 안전 관련 통계, 학생 행동 특성 데이터의 활용을 방안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현재 교육부는 학교 안전관리 지능화 및 학교 안전 데이터 관리체계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핵심 내용은 AI(인공지능)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이고 예방적인 학교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표-2 교육부 학교 안전관리 방안 주요 내용⁶⁾]

구분	주요 내용	목표 및 기대효과
AI 기반 예측 및 예방 시스템 (표3 참조)	(시스템 활용) '학교안전지원시스템' 적극 활용 (25년 6월 운용 중) (데이터 분석) 과거 사고 통계, 학교 정보 등 AI 기반 데이터 분석 (사고 예측) 학교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고 유형' 예측 및 제공 (맞춤 지원) 예측 기반 안전교육 자료 자동 제공, 시설 개선안 제언	·사후 대응에서 데이터 기반의 사전 예방 체계로 전환 ·학교 현장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지원
신속한 재난대비·대응	(사전 경보) 집중호우, 폭설 등 재난 예측 정보 사전 안내 (실시간 공유) 피해 상황을 학교-교육청-교육부 간 실시간 공유 (데이터 확장) 대학 안전사고 데이터까지 구축하여 전 학교급 관리	·재난 발생 전 신속 대비 및 피해 최소화 ·유기적 협력 체계를 통한 초기 현장 대응력 강화
체험 중심 안전교육 강화	(훈련 고도화) '단일재난'에서 '복합 재난' 대응 훈련으로 강화 (취약계층 지원) '찾아가는 안전체험 교육',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 확대 (학생 참여) 학생 주도형 안전교육	·실제 재난 상황에 가까운 실질적 대응 역량 강화 ·교육 소외 계층 없이 모든 학생의 안전 역량 증진

5) 「제4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2025~2027)」, 8쪽, 24.12.8 「추진방향 및 추진 전략」 중 3차 기본계획의 주요 성과와 한계 분석을 토대로 보다 발전된 안전사고 예방정책을 위해 지능형 통합 안전관리 및 현장중심 안전교육 내실화, 지속가능한 학교안전 기반 조성의 3대 전략목표를 발표함.

6) 「제4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2025~2027)」 9~10쪽 주요내용 요약 후 표를 구성하였음

	및 훈련 지속 확대	
안전 인프라(기반시설) 확충	(균등 기회) 전국 시도에 종합형 학생안전체험관 1개소 이상 건립 (다양화) 교실형, 이동형, 소규모형 등 다양한 안전체험관 확충	·지역 간 체험교육 격차 해소 ·언제 어디서든 접근 가능한 안전 체험 환경 조성
기타 지원 및 제도 개선	·현장체험학습 준비 단계부터 보조 인력 배치 지원 ·학교 밖 늘봄, 유보통합 등 새로운 교육 수요에 맞춰 공제 사업 정비 ·시도별 공제급여 편차 해소를 위한 지원 표준안 마련	·교직원의 업무 부담 경감 및 현장 활동 안전성 제고 ·공정하고 안정적인 학교안전사고 보상 체계 확립

■ AI 기반 안전관리체계(안)

[표-3] AI 기반 예측 및 예방 시스템 주요 내용7)

구분	주요 내용	예시
학교안전 데이터 확대 및 연계 강화	(AI 예측사고 모델 제시) 학교안전 사고 통계 및 각종 안전데이터 분석을 통해 학교별 특성을 고려한 '학교안전 예측사고 모델' 제시	1) 학교급, 규모, 지역, 시기, 시간 등을 고려한 주요사고 유형 제시 2) 전기·전자·농업·해양 등 교육과정 실습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제시
	(맞춤형 솔루션 제공) 테마별, 사고 유형별 학교안전사고 통계 분석결과 및 단위학교 사고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안전교육 방안 제안	1) 학교 유형별(학교급, 규모 등) 맞춤형 안전관리 방안 등 2) 코로나19가 학교안전사고에 미친 영향, 체육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집중 분석 등
단위학교 안전사고 예방 계획 수립·평가 내실화	(학교계획 수립 지원) 시스템 기반 학교계획 우수사례 공유 및 단위 학교 상황·특성별 안전교육·훈련 제시로 학교계획 수립 지원	

7) 제4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2024.12) 9~10쪽, 1. 학교 안전관리 지능화 표 구성

(학교계획 평가 내실화) 각 시도별로 상이했던 학교계획 평가 기준을 표준화하고 시스템 기반 검토, 정책 발굴 실시 및 환류 기능 강화
--

○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IoT등 기술기반 시스템을 활용하여 교육감으로 하여금 교육기관의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방지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부 정책 방향성과 부합하는바,

미래지향적 ‘지능형 학교 안전망’을 구축하는 첫걸음이자, 학생의 생명과 건강 보호라는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공적 책무를 다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안 제10조제3항에 따른 규정이 실행된다면 첨단 기술을 활용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이 가능하며, 학교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학교구성원의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고 학교의 안전관리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반면에,

인공지능 시스템 대규모 구축 비용, 학생과 교직원의 활동 데이터 활용 문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 기술 의존도 심화에 따른 책임소재 불분명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 따라서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교육감은 새로운 시스템 도입과 함께 안정적인 예산 확보, 학교구성원의 권리보호, 교직원 역량강화를 통한 시스템 활용능력 강화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동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6864, 2025. 6. 4.)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지원팀장	정진국(2180-8263)	입법조사관	이진석(2180-8266)
----------	----------------	-------	----------------